

의안번호	2204286
의 퇴 인	맹성규의원
회 답 일	2024.10.14
추계번호	24B40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2조의2 제2항 단서신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제2항) <u>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아닌 인접한 지역에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수 있음(단서 신설)</u>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52조의2제2항 단서 신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동법 제52조의2는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시군구가 아닌 인접 지역까지도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분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있

어, 공공기여분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감소될 수 있음

-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배분비율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분이 인접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지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공공기여분의 감소)이 감소할 수 있음
-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용도를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인접 지방자치단체로 납부되는 비용, 사업별 토지가치 상승분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수입감소분을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II.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